

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 올해부터 시작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 활동 현장 체험 및 지킴이 격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6일(목) 13:3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체 1,000명 규모)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로, 연간 약 28만 회 순찰을 목표로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킴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여 점검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서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지킴이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동식 비계 및 접이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현장 소장에게 추락사고 예방 등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추락 방호망 등 재정지원 항목과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현장은 감독 행정의 발길이 일일이 닿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안전한 일터 지킴이’분들이 소규모 현장을 찾아다니며 핵심 위험요인을 짚어주고, 안전시설 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든든한 안전일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기술·재정지원과 더불어 안전보건공단 패트론클, 지방관서 감독과 연계 등을 통해 지킴이 활동을 초기에 안착시켜 사업장 규모별 위험격차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안전한 일터 지킴이 개요
 2.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문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김성경 (044-202-8937)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나상명 (044-202-8881)
			사무관	이근배 (044-202-8882)



붙임 1

안전한 일터 지킴이 개요

- **(배경)** 사고사망만인율('24년 0.39‰) OECD 평균(0.29‰) 수준 감소를 위해 사고사망 취약 업종·규모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필요

* 3차산업 사고사망만인율(0.39‰) 보다 높은 대표적 사고사망 취약업종은 건설업(1.57‰), 조선업(1.12‰), 제조업(0.46‰)으로 특히 소규모·협력업체 노동자가 취약

- **(사업내용)** 안전보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노·사단체 전문가를 채용·위촉하여 산재 취약 업종에 불시 순회점검으로 산재예방 커버리지를 확대

❖ 주요 순찰대상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순찰
- ▶ (조선업) 사고사망 비율이 높은 완성배·블록업체의 협력업체와 수리조선 사업장 대상
- ▶ (제조업) 50인 미만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끼임, 부딪힘 등 집중점검

- **(채용인원)** 1,000명, * 순찰목표 약 277,500회(채용 237,500회, 위촉 40,000회)

- 안전공단 직접 채용 800명(건설600, 조선50, 제조150),
노사단체 소속 인원 위촉 200명(건설130, 조선20, 제조50)

- **(사업절차)** 사고사망 위험요인 지도+재정사업 연계 → 재방문을 통해 개선결과 모니터링

- 지도거부, 안전조치 미개선 또는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현장은 안전공단 패트롤 및 지방노동관서 감독 연계



1. 사업개요

- 공사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은 50억원 미만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축사·창고 등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에 떨어짐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떨어짐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추락방호망, 타워형 안전작업대, 고소작업대, 채광창 안전덮개 등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후 신청 가능
 -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 지붕·철골 공사 현장의 사업주
 - ※ 원도급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 (공장·축사·창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용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용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건설현장과 공장·축사·창고 사업주*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정함

* 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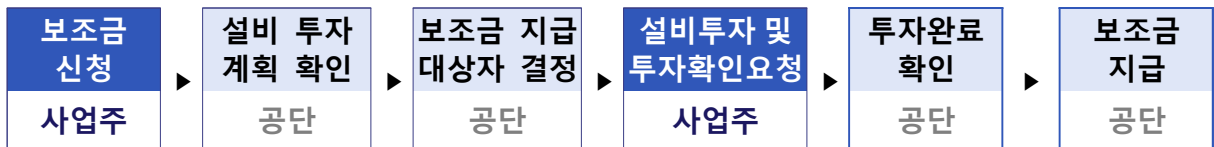
구분	지원한도
건설현장	현장당 최대 3,000만원,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같은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횟수) 당해연도 사업장(건설현장)별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품목)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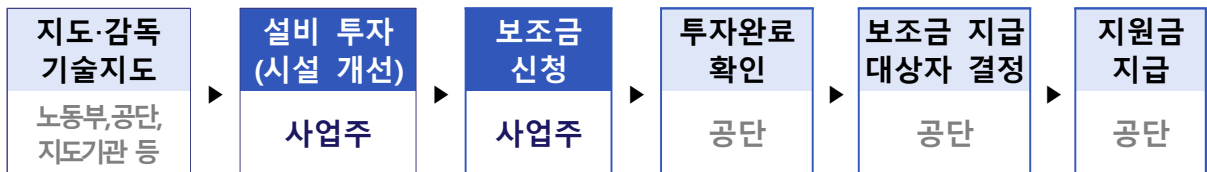
품목	대상설비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앵커(시작, 중간, 코너, 엔드 포함), 카라비너, 중간 가이드, 와이어 등 구성품 일체
안전대 부착설비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대, 앵커 스트랩, 빔 앵커(고정용), 빔 앵커(슬라이딩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와이어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로프형)
안전방망	추락방호망(고정용 지지로프 등 부속품 일체)
타워형 안전작업대	발판 1열, 2열 및 높이 1단, 2단, 3단 타워형 안전작업대로 구분
고소작업대	작업 최대높이 12m, 16m, 18m 굴절형 고소작업대로 구분

- (지원절차) 사업주가 보조금을 신청한 후 공단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따른 설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 고용노동부·공단 등 기술지원 시 떨어짐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전 신속지원 가능

- <기본지원절차>



- <신속지원절차>



※ 노동부, 공단, 지도기관 등 기술지도 내용 중 보조금 지원 안내 및 보조금 신청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속지원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되는 보조금은 공단 투자완료 확인 등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